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3호다목7) 중 “모두 동일한”을 “모두 동일(식품과 축산물의 경우에는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)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“제품명은 제품명”을 “제품명”으로, “같은 제품명”을 “동일한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(제조·가공장)·제품명·가공방법”을 “(제조·가공장)·가공방법”으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나.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당 제품 등록취소

별표 11 제4호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당 제품 등록취소

별표 13 II 제1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27조,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

별표 13 II 제2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II 제3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하며, 같은 II 제4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II 제11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

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하며, 같은 II 제15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II 제16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. 다만, 별표9 제3호, 별표10 제4호 개정규정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1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8